

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(폐쇄명령) 공시송달 공고

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(폐쇄명령) 전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으나, 사업장 이전 및 폐업, 등기우편물의 반송(수취인불명, 폐문부재 등)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6월 29일

파 주 시



1. 제 목: 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 배출시설 행정처분(폐쇄명령)에 따른 청문실시
2. 대 상: 붙임참조
3. 처분내용: 대기, 폐수, 소음·진동배출시설 폐쇄
4. 공고기간: 2026. 6. 29. ~ 2026. 7. 16. (17일간)
5. 법적근거: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, 물환경보전법 제42조, 소음·진동관리법 제17조
6. 청문 및 의견제출
 - 청문일시: 2026. 7. 16. 10:00
 - 청문장소: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(파주시 시민회관길 16-11, 명성빌딩 2층)
 - 청문주재자: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장 현동호
 - 의견진술방법: 서면 또는 구술(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)
7.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와는 별도로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8.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(031-940-847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위 청문실시 통지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
PAJU